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9. 2. 19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2. 19

라. 上程日字 : 1998. 2. 26

2. 提 案 說 明 要 旨 (提 案 說 明 : 自 治 行 政 課 長 方 景 泰)

가. 提 案 理 由

-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중
- 그동안 불합리하게 쓰여진 조문의 단어 및 직무분야별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 要 骨 子

- 제명을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 조문중 “별정직지방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함.

- 별정직의 직무분야별 명칭을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위생감시원”을 “위생관리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원”을 “공기업회계요원”으로 변경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안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쓰여진 제명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 특히,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지정하는 직무분야별 명칭을 현실에 맞는 용어로 정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단순히 조문의 단어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49 호
의 결 년 월 일	1999. . . (제 회)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2. 19 .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우리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하게 쓰여진 조문의 단어 및 직무분야별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임

□ 주요골자

- 제명을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로 변경함(제명).
- 조문중 “별정직지방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위생 감시원”을 “위생관리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원”을 “공기업회계요원”으로 별정직의 직무분야별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내지 제3조중 “별정직지방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조제목중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위생 감시원”을 “위생관리원”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공기업특별회계원”을 “공기업회계요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서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u>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범위) <u>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u>는 다른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u>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u>)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u>별정직지방공무원</u>으로 한다.</p> <p>1호 및 2호 (생략)</p> <p>3. <u>부녀상담원</u></p> <p>4호 내지 6호 (생략)</p> <p>7. <u>사회복지사</u></p> <p>8. <u>위생 감시원</u></p> <p>9. <u>공기업 특별회계원</u></p> <p>10. (생략)</p>	<p><u>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방별정직공무원</u>----- -----.</p> <p>제2조(범위) <u>지방별정직공무원</u>----- ----- -----.</p> <p>제3조(<u>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u>) -- -----<u>지방별정직공무원</u>-----.</p> <p>1호 및 2호(<u>현행과 같음</u>)</p> <p>3. <u>여성복지상담원</u></p> <p>4호 내지 6호 (<u>현행과 같음</u>)</p> <p>7. <u>사회복지전문요원</u></p> <p>8. <u>위생관리원</u></p> <p>9. <u>공기업 회계요원</u></p> <p>10. (<u>현행과 같음</u>)</p>